

영등포구의회
제206회 임시회

『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3. 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338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우리구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3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우리구 위원회 성비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개정
 - 정비내역

조례명	정비사항	비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%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2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6조제1항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3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4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비와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2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

위원의 40%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으며,

- 안 제3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음

○ 검토결과,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